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27

발의연월일: 2021. 5. 27.

발 의 자:이만희·김선교·권명호

박대수 · 박덕흠 · 이명수

김승수 · 엄태영 · 한무경

권성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축산법」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축산환경 개선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경우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동법의경우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.

이에, 「축산법」에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·지정절차·인증업무의 범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).

법률 제 호
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
- 2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
- 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
- 4.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
- ⑤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·지정기준·지정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	제21조(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
의 인증) ① ~ ③ (생 략)	의 인증) ① ~ ③ (현행과 같
	승)
④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	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
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	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	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
<u>로 정한다.</u>	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
	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
	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
	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
	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
	<u>다.</u>
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	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
	2.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
	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
	<u>때</u>
	3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
	<u>게 된 때</u>
	4.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
	<u>행한 때</u>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
	증의 기준 및 절차, 제2항에 따

른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·지정
기준·지정절차 및 제4항에 따
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